통보

본 통보문은 10.6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**1.** | **통보국가:** 대한민국**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 항):**  |
| **2.** | **담당기관:** 식품의약품안전처**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:** 관련 문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(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)에서 확인할 수 있다.또한 다음 연락처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.국제협력담당관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, 28159전화: (+82) 43 719-1564팩스: (+82) 43-719-1550이메일: intmfds@korea.kr |
| **3.** | **조항 2.9.2 [****X],** **2.10.1 [****],** **5.6.2 [****],** **5.7.1 [****], 3.2 [****], 7.2 [****], 기타에 근거해 통보****:**  |
| **4.** | **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또는 CCCN 번호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** 화장품 |
| **5.** | **제목 (페이지수, 언어):** "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" 개정안 (10 페이지, 한국어) |
| **6.** | **내용:** "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"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.1)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- 2-니트로-p-페닐렌디아민, 2-아미노-4-니트로페놀, 2-아미노-5-니트로페놀, 황산 2-아미노-5-니트로페놀, 황산 o-아미노페놀(2-아미노페놀), 황산 2-클로로-p-페닐렌디아민 및 황산 m-페닐렌디아민을 금지된 염모제 성분 목록에 추가한다.2) 화장품 농도상한 변경- 2,4-디아미노페놀 HCl : 0.5%→0.02%- 과붕산나트륨,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: 12.0%→7.0% |
| **7.** | **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적과 근거:**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 |
| **8.** | **관련 문서:** MFDS 공고 제2023-221호, 2023-05-04 |
| **9.** | **채택 예정일:** 추후 결정**시행 예정일:** 추후 결정 |
| **10.** | **의견 마감일:** 통보일로부터 60일 |
| **11.** | **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X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** 무역기술장벽(TBT)과국가기술표준원(KATS)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, 369-811전화: (+82) 43 870 5315 팩스: (+82) 43 870 5682이메일: tbt@kats.go.kr 웹사이트: <http://www.knowtbt.kr><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3/TBT/KOR/23_09721_00_x.pdf> |